

정보공개규정

제10차/개정 2018-04-27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조 개정 2011.12.26>

제2조(적용범위) <조 개정 2011.12.26> 한국수자원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본사, K-water융합연구원, 권역부문, 시화사업본부, 지사·단 등(이하 "지사"라 한다)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7.04.06. 개정 2018.04.27>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조 개정 2010.03.12>

1. “정보”란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.< 개정 2011.12.26 >
2. “공개”란 공사가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·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.< 개정 2011.12.26 >
3. “총괄부서”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본사 부서를 말한다.< 개정 2011.12.26 >
4. “관리부서”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< 개정 2011.12.26 >

제2장 자발적 정보의 공표 등

제4조(자발적 사전공개 대상 정보 등)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,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 개정 2011.12.26 ,개정 2014.08.01>

1.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2.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4. 식품·위생, 환경, 복지,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< 신설 2011.12.26 >

5. <삭제 2014.08.01>< 신설 2011.12.26 >

6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< 신설 2011.12.26 >

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< 신설 2011.12.26 >

나.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,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< 신설 2011.12.26 >

7. 국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< 신설 2011.12.26 ,개정 2014.08.01>

8. 사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< 신설 2011.12.26 >

9. 그 밖에 사장이 따로 정하는 정보< 신설 2011.12.26 >

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, 간행물의 발간·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 개정 2011.12.26 ,개정 2014.08.01>

③ 총괄부서 및 지사 등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안내와 상담편의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.< 신설 2011.12.26, 개정 2014.08.01, 개정 2018.04.27 >

제5조(정보목록의 작성·비치 및 원문공개) [본조신설 2014.08.01,전부개정 2016.03.09]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사가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·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시스템(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포함)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정보목록 중 원문 공개 대상(사장 및 임원급 결재문서)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(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포함)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 정보 중 제10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장 정보공개절차

제6조(정보공개 청구서 접수)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, 모사전송,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.< 신설 2014.08.01 >

②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총괄부서(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접수된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인 경우에 한함) 또는 관리부서에서 접수하고,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총괄부서에서 관리부서로 분류하되,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부서를 지정한다.< 개정 2011.12.26 ,개정 2014.08.01>

제7조(정보공개여부의 결정) [본조신설 2014.08.01]①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관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 정보공개시스템(고객의 소리)으로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⑤ 관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정보공개 처리 예외사항) [본조신설 2014.08.01]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사가 보유·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·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이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가 「민원사무처리규정」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.

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·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.

1.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
2.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

제9조(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)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·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 개정 2011.12.26 ,개정 2014.08.01>

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는 그 정보 소재(所在)의 안내로 공개결정에 갈음할 수 있다.

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·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.< 개정 2011.12.26 >

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·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.< 개정 2011.12.26 >

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< 신설 2011.12.26 ,개정 2014.08.01>

제10조(비공개대상정보) ① 공사에서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 개정 2011.12.26 ,개정 2014.08.01>

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< 개정 2014.08.01 >

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 중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사유가 없어진 정보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.< 개정 2011.12.26 ,개정 2014.08.01>

제11조(부분공개)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.<조 개정 2010.03.12,개정 2014.08.01>

제12조(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<조 개정 2010.03.12,개정 2014.08.01>

1.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
2.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< 개정 2014.08.01 >
3.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< 개정 2014.08.01 >
4. 그 밖에 사장이 따로 정하는 정보< 개정 2014.08.01 >

제13조(이의신청) [본조 신설 2008.08.14]①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공사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

다.< 개정 2011.12.26 >

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 개정 2011.12.26 >

③ 관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< 개정 2011.12.26 >

제13조의2(처리상황의 확인·점검) [본조 신설 2008.08.14]①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정보공개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수시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< 개정 2011.12.26 >

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이 결과를 내부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< 개정 2011.12.26 , 개정 2014.08.01>

제13조의3(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) [본조신설 2011.12.26]① 제7조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사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< 개정 2014.08.01 >

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, 제3자는 공사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.

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및 정보공개위원회

제14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) ①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 개정 2011.12.26 >

② 심의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총괄부서장이 되며, 위원은 2급(을) 이상 직원 중에서 3명과 외부전문가 3명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.< 개정 2011.12.26 ,개정 2014.08.01>

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된다.< 개정 2011.12.26 >

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외부전문가인 심의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⑤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)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.

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 개정 2011.12.26 >

1.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< 신설 2011.12.26 >

2.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 신설 2011.12.26 ,개정 2014.08.01>

가. 공사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
< 신설 2011.12.26 >

나. 청구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< 신설 2011.12.26 ,개정
2014.08.01>

다. 제3자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< 신설 2011.12.26 ,개정
2014.08.01>

라.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< 신설 2011.12.26 >

3. <삭제 2014.08.01>< 신설 2011.12.26 >

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, 청구안건 담당자, 제3자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< 신설 2011.12.26 >

제16조(지사·단 등의 심의회 설치·운영) ① 지사 등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의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 개정 2018.04.27 >

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그 밖에 설치·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전원을 내부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< 개정 2011.12.26 ,개정 2014.08.01>

제17조(정보공개위원회 설치) [본조신설 2014.08.01]① 공사는 정보공개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2급(갑)이상의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2.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정보공개의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되,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
제5장 보칙

제18조(비용부담)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며 우편요금은 「우편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.< 개정 2011.12.26 >

③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현금과 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비영리의 학술·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
2. 교수·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

3. 삭제 <2008.8.14>
 4. <삭제 2011.12.26>
 5.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< 신설 2011.12.26 >
- ⑤ 제4항의 규정에 수수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 개정 2011.12.26 >
1.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: 50퍼센트< 개정 2011.12.26 >
 2. 삭제 <2008.8.14>
 3. <삭제 2011.12.26>
 4. 제4항제5호에 해당할 경우 : 100퍼센트< 신설 2011.12.26 >

부칙 (2005.01.01)

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5.01.18)

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5.08.03)

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8.08.14)

이 규정은 200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9.03.03)

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0.03.12)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1.12.26)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13조제4항과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(2014.08.01)

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03.09)

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7.04.06)

이 규정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8.04.27)

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